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533호 2014. 6. 2.(월)

【조 례】

【규 칙】

- 제460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제461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71
- 제462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78
- 제463호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3
- 제464호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99

【훈 령】

【예 규】

【고 시】

- 제2014-80호 도로명 주소 부여 고시문 112
- 제2014-81호 도로명 주소 변경 고시문 114
- 제2014-82호 도로명 주소 폐지 고시문 116
- 제2014-83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18

【공 고】

- 제2014-725호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22
- 제2014-756호 공주시 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36
- 제2014-76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사업 완료공고 140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담당관 ☎ 840-2051)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4년 6월 2일

공주시 규칙 제460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제3조제2항제4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를 “제2차 시험에” 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를 “8급·9급 공무원의”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제8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14조의2의 제목“(서류전형 기준)”을“(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을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을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

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제15조제4항 단서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을 “일반직공무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 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제15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6조의 제목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을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 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항 번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능직사육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공무원”을 “위생직렬의 사역직류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9 제18호”를 “별표 9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공주시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의 제목“(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을“(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을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로 한다.

제28조 중 “영 제7조의5제4항”을 “영 제7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7의4, 별표 8,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3,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 별표 5의3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 관련)

직렬 \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 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 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 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위생	위생			<u>위생사</u> <u>영양사</u>	<u>위생사</u> <u>영양사</u>
	사역			<u>영양사</u>	<u>영양사</u> <u>오물처리사 1급</u>
조리	조리			<u>조리사 1급</u>	<u>조리사 1급</u>
간호 조무	간호 조무				<u>간호조무사</u>
운전	운전				<u>제1종운전면허(보통)</u> <u>제2종운전면허(보통)</u>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4의2] (신설)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제16조제3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비고 : 위 “체격” 항목 중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비고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 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해서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정	운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산	전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톨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선	기술사 :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 건조, 동력기계정비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공 업	일반전기	<p>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 능 장 : 전기</p> <p>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기 능 사 : <u>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u></p>
	전 자	<p>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 능 장 : 전자기기</p> <p>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p> <p>기 능 사 : <u>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u></p>
	원 자 력	<p>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p> <p>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금 속	<p>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야 금	<p>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 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 능 사 : <u>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u></p>
	섬 유	<p>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 능 사 : <u>염색</u></p> <p>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일반화학	<p>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 능 장 : 위험물, 가스</p> <p>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 능 사 : <u>화학분석, 위험물, 가스</u></p>
자 원	<p>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p> <p>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p> <p>기 능 사 : <u>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u></p>	
농 업	일반농업	<p>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p> <p>기 능 사 : <u>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u></p>
	잠 업	<p>기 사 : 생물공학</p> <p>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농 화 학	<p>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p> <p>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기 능 사 : <u>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u></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농 업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잠수
해양수산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수산물검사	산업기사 :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해양수산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u>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u>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u>식품가공</u>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u>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u>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u>조경, 산림, 환경</u>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u>조경, 산림, 환경</u>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u>조경, 산림, 환경</u>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환 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u>조경, 산림, 환경</u>
		일반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u>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u>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 축
	지 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u>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u>
		교통시설
	도시교통 시 설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시 설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송통신	통신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전송기술	기 능 사 :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 능 사 : 방송통신, 정보처리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행 정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감정평가사(7)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사(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공업	원자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농업	축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의	수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건	보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위생사(2) 치과기공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 의사(2)				
	치 무		치과 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오물처리사 1급(3)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 리	조리				조리사 1급(4)	조리사 1급(2)	조리사 1급
간 호 조 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3](신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제15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급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행정	운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u>영사</u>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u>전기철도</u>)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u>메카트로닉스</u>)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공 업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야 금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시 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1·2급 항해사			3·4급 항해사	5·6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3·4급 기관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1·2급 항해사	3·4급 항해사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1·2급 기관사			3·4급 기관사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자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직류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 호 조 무	간 호 조 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시 설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도시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 및 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조리	조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7의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4조의3제1항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자격증	등급	비율	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전문경력관 나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 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다군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신설 2006. 2.15>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의3제2항 관련)

가. 6급 이하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농업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 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열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 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 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체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 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 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잡 업	기 사 :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 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 업	농 화 학	<p>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p> <p>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기 능 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p>	
	축 산	<p>기 술 사 : 축산, 식품</p> <p>기 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p>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p>
녹 지	생명유전	<p>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p> <p>기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p> <p>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p> <p>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p>	<p>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산림자원	<p>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p> <p>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p>	
	산림보호	<p>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p> <p>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p> <p>기 능 사 : 산림</p>	
	산림이용	<p>기 술 사 : 산림</p> <p>기 사 : 산림, 임산가공</p> <p>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p> <p>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p>	
	조 경	<p>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p> <p>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p> <p>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p> <p>기 능 사 : 조경, 산림</p>	
해양수산	일반해양	<p>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p> <p>기 능 사 : 잠수</p>	
	일반수산	<p>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p> <p>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p>	
	수산제조	<p>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p> <p>기 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p>	
	수 산 물 검 사	<p>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p> <p>기 능 사 : 수산식품가공</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해양수산	수산증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시설	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건	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 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 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 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일반), 방사선취급 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용 적용: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 기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환 경	일반환경	<p>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가수질)</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수 질	<p>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 (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p> <p>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대 기	<p>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 (대기)</p> <p>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폐 기 물	<p>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시 설	도시계획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p> <p>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 설	일반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건축사
	측지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도시교통시설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p>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건축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위생, 조리,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p>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p>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농촌지도	농업기계		
공업연구	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p>	
공업연구	전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금 속	<p>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 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p>	
	섬 유	<p>기 술 사 :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p> <p>기 능 장 : 염색</p> <p>기 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 능 사 :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화 공	<p>기 술 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화 학	<p>기 능 장 : 위험물관리, 가스</p> <p>기 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 능 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p>	
	산업경영	<p>기 술 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 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p>	
물 리	<p>기 술 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p> <p>기 사 :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p>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p>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p> <p>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	작 물	<p>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농산물품질 관리사
농촌지도	농 업	<p>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p>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벼짓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잡업곤충	기 술 사 : 생사 기 사 : 생물공학	
농촌지도	잡 업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벼짓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 사 선 취 급 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 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1급, 평생교육사 2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농 공	<p>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 정비, 웨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외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 정비, 웨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 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 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외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 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 급감독자</p>
농업연구	축 산	<p>기 술 사 : 축산, 식품</p> <p>기 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p>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p>
농촌지도	축 산		
녹지연구	임 업	<p>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p> <p>기 능 장 : 산림</p> <p>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p>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p>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p>	
농촌지도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p>기 술 사 : 축산</p> <p>기 사 : 축산</p> <p>산업기사 : 축산</p> <p>기 능 사 : 축산</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p>
농촌지도	가축위생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p>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p>기 능 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p>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p>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p> <p>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p> <p>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 능 사 : 수산양식</p>	
	수산공학		
		<p>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p> <p>기 능 사 : 어로</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해양수산 연구	수산가공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의공 기능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 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설연구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p>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건축사</p>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5조제4항 관련)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2급· 연구관 지도관	3급· 연구관 지도관	4급· 연구관 지도관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연구사 지도사	7급·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경 찰 공 무 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정 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포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강 사				
	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적용대상자		24호봉 이 상	16호봉 이 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적용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7호봉 이 상	6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중 전문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 상	13호봉 이 상	9호봉 이 상	8호봉 이 하			
관 사·검 사	9호봉 이 상	6호봉 이 상	4호봉 이 상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비고

1. 윗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윗 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특별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제15조제5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야 금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
수 의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해양
	일반수산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수산제조	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수산증식	증식학, 수산증식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수 산 물 검 사	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방송통신	통신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항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종	항공운항학
	정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무	약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약제	축산
보건	보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약제·간호 직류는 별표 4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에 한정함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촌지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잡업, 잡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 교육, 가정복지,
어촌지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5조제6항 관련)

구 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u>근무경력 및</u> <u>연구경력</u>	<u>박사</u>	<u>8년</u>	<u>4년</u>	二	二
	<u>석사</u>	<u>12년</u>	<u>8년</u>	<u>4년</u>	二

비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5조제6항 관련)**

구분	계급	· 지방연구직· 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 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 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 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 하는 연구관	· 연구사 및 지도사
		· 지방연구직· 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지방연구직· 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 하는 지도관	· 지방연구직· 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 하는 연구관	
연구 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고 :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3]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
(제26조제2항 관련)

구분		상당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공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경찰공무원		경정	경감·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령 지방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교 지방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사		
군인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군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정보원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임기제 공무원	시간 선택제	“가급”으로 채직한 기간	“나급”으로 채직한 기간	“다급”으로 채직한 기간	“라급”으로 채직한 기간	“마급”으로 채직한 기간		
	한시	“5호”로 채직한 기간	“6호”로 채직한 기간	“7호”로 채직한 기간	“8호”로 채직한 기간	“9호”로 채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0호봉 이하	“나”군 24호봉 이상	“나”군 23호봉 이하	“다”군 25호봉 이상	“다”군 24호봉 이하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32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 행정, 사회 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정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 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 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 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 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 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 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 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품질 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 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 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 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 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 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 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 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 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 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 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 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공 업 (전 기)	기술사(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 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 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 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 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 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 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공 (금 속) 업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섬 유) 업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화 가) 업 공 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 (자 원) 업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농 업) 업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축 산) 업 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지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 의 의)	수의사		
해양 (수 산) 수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해양 (선 박) 수 산 선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 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직렬 \ 계급	5 급	6급 · 7급	8급 · 9급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 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	산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설 (토목,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 송 통 신 (통 신 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 송 통 신 (통 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자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 송 통 신 (전 자 통 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위 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토 목 운 영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u>건축운영</u>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장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u>통신운영</u>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u>전기운영</u>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u>기계운영</u>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u>화공운영</u>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학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학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u>가스운영</u>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 고분자제품제조)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u>선박항해 운영</u> <u>선박기관 운영</u>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 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 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u>농림운영</u>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 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 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 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u>보건운영</u>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 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u>건축운영</u>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 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 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 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u>통신운영</u>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 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 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u>전기운영</u>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 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 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 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 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기계운영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p> <p>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 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 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 분야>, 품질관리)</p> <p>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 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 제관, 배관)</p>	<p>산업기사(운환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 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p>
화공운영		<p>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사(공업화학, 화학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 관리, 식품)</p> <p>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p>	<p>산업기사(공업화학, 화학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가스운영		<p>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p> <p>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p> <p>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p>	<p>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 고분자 제품제조)</p>
선박형제 운영 선박기관 운영		<p>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 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p> <p>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p> <p>1·2·3·4급 항해사</p> <p>1·2·3·4급 기관사</p>	<p>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 표지)</p> <p>5·6급 항해사</p> <p>5·6급 기관사</p>
농림운영		<p>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 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p> <p>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 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p> <p>기능장(산림)</p>	<p>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p>
보건운영		<p>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 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p> <p>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p> <p>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 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p> <p>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p>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업연구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 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p>
농업연구	<p>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p> <p>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p>
농업연구 (잡업근중)	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산)	<p>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p> <p>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p> <p>수의사</p>
농업연구 (농공)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p> <p>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p>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p>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p> <p>영양사, 위생사</p>
농지연구	<p>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정)</p> <p>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정)</p>
해양 수산연구	<p>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p>
보건연구	<p>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p> <p>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p> <p>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p>

직렬	계급	연구사
환경 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 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 연구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직렬	계급	지도사
농촌 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함)
농촌 지도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어촌 지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 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p> <p><u>1. 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임용</u></p> <p><u>2. 명예퇴직·공무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u></p> <p><u>3. 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u> <신 설></p> <p>4. (생략) <신 설></p>	<p>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p> <p><u>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u></p> <p><u>2.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u></p> <p><u>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u></p> <p><u>4.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u></p> <p>8. (현행 제4호와 같음)</p> <p><u>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u></p>

		승진 임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신 설>	7.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응시원서접수 시작일의 20일 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① (생략)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2차 시험에 ----- ----- ----- ----- ----- ----- ----- ----- -----

현행	개정안
<p>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64조에 따라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 ----- ----- ----- ----- ----- ----- ----- -----</p>
<p>1. ~ 2.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u></p>	<p>3. <u>8급 및 9급 공무원의 -----</u> -----</p>
<p>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p> <p>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p> <p>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p>

현행	개정안
<p>③ (생략)</p> <p>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 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② ~ ③ (생략)</p> <p>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p> <p>1. 일반직 채용시험</p> <p>가. 7급 이상 : 20세 이상</p> <p>나. 8급 이하 : 18세 이상</p> <p>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p> <p>제14조의2(서류전형 기준)</p> <p><신설></p> <p>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p>	<p>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p> <p>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응시연령) ① 법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응시연령) ----- ----- ----- -----</p> <p>1. 7급 이상 : 20세 이상</p> <p>2. 8급 이하 : 18세 이상</p> <p>제14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p> <p>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p> <p>② (현행 제1항과 같음)</p>

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현행	개정안
<p>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p> <p>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에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회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여야 한다.</p> <p>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종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 ----- ----- -----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p>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 -----

현 행	개 정 안
-----	-------

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임용 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기능직·기능6급·기능7급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기능직·기능7급·기능8급
고등학교졸업자	9급·기능직·기능9급 이하

⑥ ~ ⑧ (생략)
<신 설>

⑤ -----

1. (현행과 같음)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

	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16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 ② (생략)</p> <p><신설></p> <p>제17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특수직무분야: <u>기능직사육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공무원</u></p> <p>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u>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u></p>	<p>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 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p> <p>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u>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u></p> <p>제17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 ----- ----- ----- -----</p> <p>1. 특수직무분야: <u>위생직렬의 사역 직류 공무원</u></p> <p>2. ----- ----- <u>별표 9 제8호</u> ----- -----</p>

<p>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p>	<p>----- -----</p>
<p>현 행</p>	<p>개 정 안</p>
<p>3.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 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 을 면제한다. 제19조(전직 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 제)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p>	<p>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9조(전직 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 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 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 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 야 한다.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 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 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 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공주시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 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 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p>

	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 ② (생략)</p> <p><신설></p> <p>제26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제33조제9항에 따른다.</p> <p>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p>	<p>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p> <p>제26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② -----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p>

<p>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p>	<p>----- 전 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 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p>
--	--

현 행	개 정 안
<p>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p>	<p>----- ----- ----- -----</p>
<p>제28조(겸임하는 경우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p>	<p>제28조(겸임하는 경우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 ----- -----</p>
<p><신 설></p>	<p>제34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p>

공주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
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4년 6월 2일

공주시 규칙 제461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을 “상위계
급”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제4조 관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제8조에 따름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③ 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④ 직급·계급·직무군 (호봉)	
	⑤ 성명 한글 한자	⑥ 주민등록번호		
	⑧ 전화번호(자택)	⑦ 주소 □□□-□□□		
	⑩ 정년일	⑨ 근속기간 년 월		
⑪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선고형:)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 부서의 장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개월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선고형:)		
확인		인사담당 부서의 장 (인)	연금담당 부서의 장 (인)	감사담당 부서의 장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의 장

직인

공주시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뒤쪽)

작성 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연금 및 감사담당 부서의 장이 직접 적습니다.
(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의 장이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명 예 퇴 직 원 (제4조 관련)

1. 소 속:

2. 직 위:

3. 직급·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 (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제13조 관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름	
소속		공무원 구분	[]일반직(압가제 제외) []특정직() []별정직	직급·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호봉)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소 □□□-□□□					
전화번호 (자택)		최초 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개월
수당 청구액			산출내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부	수수료 없음
------	---	--------

확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의 장

직인

공주시장 귀하

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조 기 퇴 직 원 (제13조 관련)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생 략)</p> <p>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u>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u></p> <p>③ (생 략)</p>	<p>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상위계급</u> ----- ----- -----</p> <p>③ (현행과 같음)</p>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4년 6월 2일

공주시 규칙 제462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 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을 “별표 2의 음주운전 등 징계기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으로 한다.

별표 1 중 7호 나목 및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별표 2와 같음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폭력 등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별표 1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성폭력 등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음주운전 등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음주운전							음주정도에 따라 징계 (무면허 또는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1) 면허정지(0.05%~0.10%미만) 1회						○	
2) 면허정지(0.05%~0.10%미만) 2회						○	
3) 면허정지(0.05%~0.10%미만) 3회		○					
4) 면허취소(0.10%이상) 1회						○	
5)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1회						○	
6)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2회		○					
7) 면허취소(0.10%이상) 2회						○	
8) 면허취소(0.10%이상) 3회		○					
9)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10)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1회						○	
11)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2회		○					
12)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인 적 피 해 발 생					○	
	물 적 피 해 발 생					○	
13)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인 적 피 해 발 생					○	
	물 적 피 해 발 생					○	
14) 음주운전 적발시 신분 은폐하여 승진한 경우		○					
2. 교통사고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인 적 피 해 발 생					○	
	물 적 피 해 발 생					○	
2) 무면허 교통 사고후 도주	인 적 피 해 발 생					○	
	물 적 피 해 발 생					○	
3.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
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						○	
2) 면허 미 취득,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p> <p>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누우치는 정도 및 그 밖에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u>별표 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u> 및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p>	<p>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p> <p>① ----- ----- ----- ----- ----- ----- ----- <u>별표 2의 음주운전 등 징계기준</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징계의 감경) ① ----- ----- ----- ----- ----- ----- ----- ----- ----- ----- -----</p>

현행	개정안
<p>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p> <p>1. ~ 4. (생략) ② (생략)</p>	<p>-----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p> <p>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4년 6월 2일

공주시 규칙 제463호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을 “공주시자원봉사
센터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소장 1명”을 “센터장 1명”으로 하고, “소장이”를 “센터
장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센터의 소장의”를 “센터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

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이 임용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③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보수 이외의 수당은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소장이” 를 “센터장이”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공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같은 조 제6항은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소장은” 을 “센터장은” 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소장에게” 를 “센터장에게” 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제 제4호 서식)

3. 자원봉사자증(별지 제5호 서식)

4.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

별표 제1호와 별표 제3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의 기구와 정원 (제3조제1항 관련)

○ 기 구



○ 정 원

계	센터장	사무국장	담당자 (직접 운영시)	운영요원	비고
6(1)	1	1	(1)	4	

※ ()는 공무원

[별표 3]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보수지급기준 (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센 터 장	사무국장	팀 원	
인 건 비	기 본 급	공무원 5급 대우	공무원 6급 대우	공무원 8급 대우
수 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실비변상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센터장이 무보수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명절휴가비			
법적 충당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급여충당금			법적 산정요율 적용

- ※ 코디네이터 급여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의함.
- ※ 신규 임용의 경우 1호봉을 원칙으로 함
- ※ 센터장이 무보수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실비변상의 직급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 시간외근무수당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함.

[별지 제2호 서식]

수요처 현장 확인 보고서(제9조제1항 관련)

신청일 : 년 월 일

보고일 : 년 월 일

수요처명		
신청서 기재 내용 이상 유무	기본사항	○ 수요처로서 적합한지 여부, 주소, 연락처 등 이상 유무 기술
	수요처 적합성 판단	○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위험 및 불안요소 여부,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등 판단
	자원봉사활동 적합성 판단	○ 자원봉사 희망사항에 대한 적합성 판단, 자원봉사활동의 수익성 여부 판단
첨부서류 내용 이상 유무	○ 추가 첨부 서류 이상 유무 확인	
담당자 의견	○ 담당자 종합판단 기술	
심사결과	<input type="checkbox"/> 등록완료 <input type="checkbox"/> 등록대기 <input type="checkbox"/> 부적절 <input type="checkbox"/> 철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별지 제3호 서식]

자원봉사자 단체 등록 신청서

NO. _____

신청일 :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연락처)	
회원구성	인원구성 및 조직구성, 인적특성		
배치결과 (실무자용)			

주 소	(우.)		
단체연락처	주 소 : 전 화 : 팩스 : 휴대폰 :		
E-MAIL		홈페이지	http://
주요연혁			
설립목적			
현재 단체 활동소개			
자원봉사 희망 분야	<input type="checkbox"/> 희망분야 : <input type="checkbox"/> 희망요일 : () 요일 시간대 (:) ~ (:) 교육희망일 : () 월 () 일 시간대 (:) ~ (:)		

[별지 제4호 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번호 :

제출용 (1 /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자원봉사 활동 실적				
자원봉사 활동 횟수		자원봉사 활동 시간		
● 자원봉사 활동 내역				
활동기간	봉사시간	분야	봉사내용	봉사장소/실적등록기관
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 함.				
년 월 일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장				

담당자 : / 연락처

[별지 제5호 서식]

자 원 봉사 자 증

(앞면)

(뒷면)

자원봉사자증 Volunteer I.D.	바탕황색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바탕흰색
(명함사진)	바탕흰색		
(발급번호)		년 월 일 공주시자원봉사센터	
(성 명)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탕황색
공주시자원봉사센터	바탕황색		

※ 규 격 : 가로5.5cm × 세로 8.7cm

령」 제14조제1항과 같고,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2와 같다.

②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에 따른다.

③ 소장 및 직원의 보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보수 이외의 수당은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소장이 무보수 비상근직일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직원의 복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 규정」 및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⑥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직원의

-----.

②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 할 경우에는 시장이 임용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③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보수 이외의 수당은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④ -----
-----센터장이 -----
-----.

⑤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공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⑥ (삭 제)

지 제4호 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제 제4호 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제 제5호 서식)	3. 자원봉사자증(별지 제5호 서식)
4. 자원봉사자증(별지 제6호 서식)	4.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
5.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5. <삭 제>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4년 6월 2일

공주시 규칙 제464호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기타 설비"는 연예·영화 등의 공연과 행사, 기타 집회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속시설과 냉·난방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및 신청) 사용허가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서면 또는 우편으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시설 사용일정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허가 처리) 사용허가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 하여야한다.

1.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으로 사용허가 신청·사용허가 취소신청·사용허가 변경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기타 부대시설의 추가사용신청은 바로 처리하여야한다.
3. 근무시간이 끝난 뒤 야간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을 사용신청 할 경우에는 바로 접수 처리하고 해당 사용료는 다음날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해당 기관 및 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문화예술 등의 행사(영화 또는 공연을 포함)로 제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거서류는 공문, 공연행사계획서 등 이와 동

등한 부가서류를 말한다.

제6조(학생의 대관허가) 학생의 신분(대학생 제외)으로 시설 사용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서와 소속학교장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대표수수료) 조례 제12조제4항의 입장권 위탁 대표수수료는 온라인 판매총액의 5.5%(부가세 포함)를 징수한다.

제8조(예매 취소 및 환불) ① 예매 취소는 공연일 전일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② 예매 취소에 따른 환불은 별표와 같다.

③ 그 밖의 예매 취소 및 환불의 관련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한다.

제9조(변상 조치) 담당공무원은 조례 제17조제4항과 관련하여 변상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 및 「공주시 재무회계규칙」 제94조에 따라 처리 한다.

제10조(정보제공) 문예회관 회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문예회관에서 시행하는 공연 및 행사를 문자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예매 취소, 환불 및 변상조치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 표]

예매 취소의 환급 금액 기준

취소 일자	환급 금액
공연 10일전까지	전액환급
공연 7일전까지	예매액의 10%공제
공연 3일전까지	예매액의 20%공제
공연 전일 (17시)까지	예매액의 30%공제
공연 당일	취소불가

※ 단 공연티켓 예매후 24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급(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 범례(3월 26일 공연의 경우)

구분 \ 계산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당일
	3월 달력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환급비율	전액환급								10%			20%			30%			취소 불가
취소기한	공연 10일전								공연 7일전			공연 3일전			전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

문예회관 사용허가 통지서(제4조제4항 관련)

신청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등록번호)	단체명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FAX	
공연(행사)명				
사용일시				
사용료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시설사용내역	부대시설	산출기초	사용료(원)	비고
<p>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공주시장</p>				

(뒷면)

대 관 허가조건

1. 공연장 질서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가. 무대에는 사전에 계획·통보된 사람 이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 나. 부득이 일부음료(물,커피,녹차등)준비시 문예회관 공연장 전문안내원 채용 및 주차요원 배치.(과자,사탕,음식 준비금지)
 - 다. 공연장내에 음식물과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라. 사용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마. 12:00~13:00, 17:00~18:00 무대 및 객석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시간협의가능)
2.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입장권,예매권등을 미리 시장과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우대권, 초대권과 유사한 무료 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입장료 및 제반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회관 시설 외의 물품·설비등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 및 종료와 동시에 철거 하여야 하며 관리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5. 대관 사용시간 이외에는 회관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간을 초과하거나 대관 시설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자와 상의후 추가 사용료는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장의 동의 없이 사용에 대한 권리를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6.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관을 사용 할 수 없으며, 취소에 따른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다만 사용일이 대관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료에 대하여는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7.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등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시장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5. 28.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백미고을길 20 (금성동) 외 3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5.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 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고지대상
1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79-7	충청남도 공주시 백이고을길 20 (금성동)	20100112	지역특성 반영	고지
2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동 279-1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길 48 (주미동)	20100112	행정구역 명칭 반영	고지
3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동 146-1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왕달들길 9 (주미동)	20120907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후,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도로 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을 추가	고지
4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9-9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길 56-31 (월송동)	20100112	중기점이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지
5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05-15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2로 22 (신관동)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명시 복합 반영	고지
6	충청남도 공주시 경상동 104-4	충청남도 공주시 경상큰길 60-1 (경상동)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지
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1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한결이길 6	20100112	옛날에 마을에 큰 절이 있었다 하여 한결이길로 부여	고지
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454-8, 454-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81	20100112	구구읍에서 마곡사를 향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마곡사의 명칭을 활용하여 유구마곡사로 부여	고지
9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454-11, 454-9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85	20100112	구구읍에서 마곡사를 향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마곡사의 명칭을 활용하여 유구마곡사로 부여	고지
1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379-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1	20100112	구구읍에서 마곡사를 향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마곡사의 명칭을 활용하여 유구마곡사로 부여	고지
1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08-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솟골길 68-2	20100112	마을에 솟이 없었다 하여 솟골길로 부여	고지
1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18-4, 61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장말뒤길 14	20100112	장말길 뒷편에 있는 길로 장말뒤길로 부여	고지
1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54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양지뜸길 78	2010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지
1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59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풍목동길 71-70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지
1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85-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계봉길 80	20100112	산이 마치 닭이 발을 꿇고 있는 것처럼 생겼다 하여 계봉길로 부여 후 행정구역 명칭 추가	고지
16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416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송선군로 163-20	20100112	오봉리 마을에 문화유적인 송선군묘가 있어 송선군로라 부여	고지
17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843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탄천산업단지길 11-21	20131023	탄천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도로명 부여	고지
18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833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탄천산업단지길 55-32	20131023	탄천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도로명 부여	고지
1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896-2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갑골길 39-64	20120423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지
2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156-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마룻골2길 83	20100112	조선시대 한사무소가 있던 마을이라 여섯골로 불리던 것이 마룻골로 변형되었다 하는 지명을 활용	고지
2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459-3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왕지말길 7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후,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도로 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을 추가	고지
2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돌정리 345-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453-2	20100112	인근동 관역거리였으므로 하여 의당로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로로 부여	고지
2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33-1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연수원길 156-21	20100202	도로의 끝자리에 연수원이 있고 마을주민 모두가 연수원을 가는 길이라 인식, 연수원길로 부여	고지
2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 16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정안길 33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지
2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복계리 187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복촌길 56	20100112	복쪽에 마을이 있다하여 복촌길로 부여	고지
2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710-1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우성길 151	20100202	우성면 중심지별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우성길로 부여	고지
2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763-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탄동길 50-6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지
2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독성리 446-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독성길 5	20100112	독성리 전체를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활용하여 부여	고지
29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기교리 462-3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단평길 394-9	20100112	조선시대 초 이 마을에 단평역이 있었다 하여 단평길로 부여	고지
30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회하리 435-3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의송회동길 58	20110506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지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5. 28.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남 공주시 금벽로 551 (신관동)의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5.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중전주소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12-7, 115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12-7, 115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12-7, 115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12-7, 115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12-7, 115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12-7, 115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12-7, 115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12-7, 115	2009.08.25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조봉리 41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조봉리 446-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송신리로 163-1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송신리로 163-1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송신리로 163-1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송신리로 163-1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송신리로 163-1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송신리로 163-12	2010.01.12	오룡리 마을에 문화유적인 송신교모가 있어 송신교로라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후계리 132-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평촌길 3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후계리 132-2, 136-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평촌길 3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평촌길 3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평촌길 3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평촌길 3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평촌길 35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 신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 357-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로 185-2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로 185-2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로 185-2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로 185-2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로 185-2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로 185-28	2010.01.12	인근에 영규대사모가 있어 영규대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1, 18-2, 24-21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1, 18-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울장리 346-1, 345-13, 345-16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울장리 453-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울장리 453-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울장리 453-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울장리 453-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울장리 453-4	2010.01.12	신관동 전마을 가점으로 하여 의당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로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1, 18-2, 24-21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1, 18-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울장리 346-1, 345-13, 345-16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울장리 453-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울장리 453-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울장리 453-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울장리 453-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울장리 453-4	2010.01.12	역사적특성 반영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5. 28.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남 공주시 주미양달뜸길 9외 3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5.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동 146-1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양달뜸길9	2014.05.28	건물말소	
충청남도 탄천면 안영리 146-13	충청남도 탄천면 차돌배기길 72-27	2014.05.28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동 279-1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길 48	2014.05.28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 16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정안길 33	2014.05.28	건물말소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산28-1번지일원에 기결정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을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재생과(☎041-840-855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06. 02.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조서 : 붙임
2.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계재생략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도시재생과 041-840-8550)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가)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체육시설	골프장	계룡면 내흥리 산28-1번지 일원	101,034	감)600	100,434	'12.5.1	계룡산 골프장

나) 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체육시설	◦ 면적감소 : 101,034㎡ → 100,434㎡ 감)600㎡	◦ 경계측량결과 반영 및 인접한 소하천 구역 중복으로 인한 골프장면적 감소

나.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5	4~6	국지도로	144	내흥리 산28-1	내흥리 835	일반도로	-	'12.5.1	체육시설 결정에 따른 중복결정
변경	소로	3	15	4~6	국지도로	143	내흥리 산28-18	내흥리 513	일반도로	-		

나)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5	소로3-15	◦ 노선 변경 - L=144m → 143m - 기점 : 내흥리 산28-1 → 내흥리 산28-18 - 종점 : 내흥리 835 → 내흥리 513	◦ 주민들의 통행불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기결정된 도로 선형 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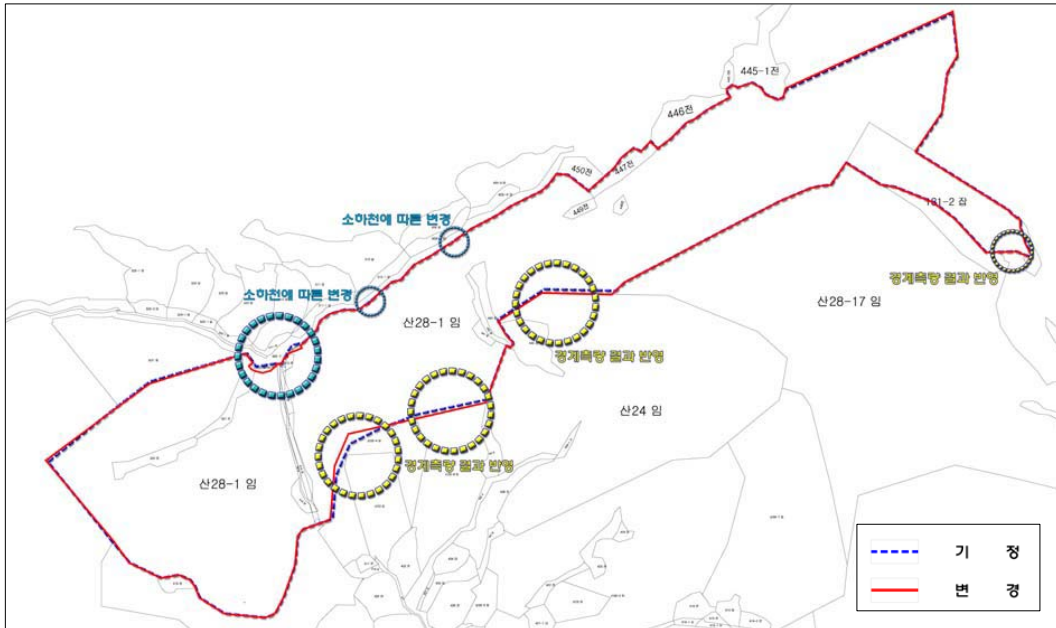
2. 편입필지조서

행정구역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5 필지			173,012	102,405	101,034	100,434		
계룡면 내흥리	181-2	잡	잡	7,985	7,741	5,780	5,770	주식회사 계룡산골프장	
계룡면 내흥리	441	임	임	182	182	182	182	이하진	사정토지
계룡면 내흥리	442	천	천	350	350	350	350	이현곤	소유자 사망
계룡면 내흥리	443	전	전	635	635	635	635	주식회사 계룡산골프장	
계룡면 내흥리	447	전	전	777	777	777	777	주식회사 계룡산골프장	
계룡면 내흥리	448	전	전	136	136	136	136	주식회사 계룡산골프장	
계룡면 내흥리	449	전	전	251	251	251	251	주식회사 계룡산골프장	
계룡면 내흥리	513	전	전	109	104	109	104	이창진	사정토지
계룡면 내흥리	514	전	전	195	195	195	195	주식회사 계룡산골프장	
계룡면 내흥리	515	전	전	410	410	410	410	이창진	사정토지
계룡면 내흥리	516	전	전	212	212	212	212	주식회사 계룡산골프장	
계룡면 내흥리	520	전	전	813	813	813	813	주식회사 계룡산골프장	
계룡면 내흥리	521	전	전	714	686	714	686	주식회사 계룡산골프장	
계룡면 내흥리	835	도	체	218	218	218	218	주식회사 계룡산골프장	
계룡면 내흥리	산28-1	임	임	160,025	89,695	90,252	89,695	주식회사 계룡산골프장	

3. 금회 결정(변경)사항

가. 체육시설(골프장)

- 경계측량결과 반영 및 소하천구역 중복에 따른 일부지역 제척



나. 도로

-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도로선형개량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안전의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물놀이에 관한 관리지역, 위험구역, 안전사고, 안전관리요원, 안전관리대책기간, 특별대책기간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나. 물놀이 안전관 사전대비를 위한 사전대비계획 수립, 안전시설설치, 관리지역 전수조사, 위험구역 설정 고시 등을 정하여 물놀이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정함(안 제4조~안 제7조)
- 다. 물놀이 관리지역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운영 규정을 둠(안 제8조~안 제19조)
- 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을 위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의 휴일비상 근무, 현장점검, 안전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상황관리 요령을 정함(안 제20조~안 제24조)
- 라. 물놀이 위험구역에서의 토거명령을 위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둠(안 제26조)

다. 안전시설 설치비, 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안전사고 예방 홍보 예산을 확보하는 규정을 둠(안 제27조~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의견 포함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안전관리과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14-702

/ 전화: 041-840-8643 / FAX: 041-840-2337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 붙임: 1)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안전의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고기잡이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관되지 않는 일반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 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이하 "안전기간"이라 한다)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이하 "특별기간" 이라 한다)"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장은 매년 4월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시민에 대한 물놀이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제5조(안전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기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 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2. 인명 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멍환·구멍줄(투척이 가능한 줄)·구멍조끼 등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 는 정비하여 안전기간 시작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4월말까지)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 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 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근거로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홈페이지 게시 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물놀이 장소로 부적합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고시·관리하여야 한다.

1. 과거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2. 수심이 깊고, 급류·와류(소용돌이), 수중암반·구조물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3.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하여 평수위보다 수위가 높아지는 지역

4. 주변공사 등 주변여건 변화에 의해 사고 위험이 유동적으로 높아지거나 높아질 우려가 있는 지역
 5. 그밖에 시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물놀이를 위한 출입과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 안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안전관리요원으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2. 유급 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5.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공주시 인명구조대, 공주시 자율방재단,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잠수협회 등 재난 안전 예방과 구조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공주시 안전산업국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간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 취약시설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 안에서의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그 외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운영기간은 관리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상과 물놀이 여건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와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및 예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복장)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15조(계약 해지)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된 근무지에서의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안전관리요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시장은 안전관리요원 등이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부상·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줄(투척 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 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연간 4시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5월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기간 동안에 물놀이 안전전담조직 구성·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휴일비상근무)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기간 중 휴일에는 공무원으로 비상 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기간에는 제1항에 따라 휴일 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의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 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안전관리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충청남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유선보고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즉시 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고,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시장이 제22조에 따른 현장 조사를 할 경우에는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의 정보공개를 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 등 비밀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25조(과태료 등) ①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별표5의 위반행위 중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방법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5장 예산 및 홍보

제26조(안전시설 설치비)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안에서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8조(홍보)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스마트폰
4. 인터넷, SNS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이용방송

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경보시설 등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제22조제1항 관련)

즉시보고

1. 사고일시	20 년 월 일() 00:00 (신고접수: . . :)
2. 장 소	
3. 안전관리 요원 배치	
4. 기상상태	
5.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인명피해 : ○인적사항 :	
6. 사고원인(경위) :	
7. 조치내용 :	
8. 그 밖에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	<p>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p> <p>1. 물놀이 위험구역 출입 금지 및 제한에 대한 규제(안 제7조제2항)</p> <p>2.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제(안 제25조제1항)</p>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p>공주시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p> <p>국 장 : 지방서기관 전경일</p> <p>과 장 : 지방행정사무관 송병선</p> <p>담 당 : 지방행정주사 윤종실</p> <p>작성자 : 지방행정주사 윤종실</p>																						
4. 근거법령명 등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h>의견수렴방식</th> <th>의견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물놀이 불특정인</td> <td>미정</td> <td>입법예고</td> <td>수렴중</td> </tr> <tr> <td>이해관계자</td> <td>물놀이 불특정인</td> <td>미정</td> <td>입법예고</td> <td>수렴중</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물놀이 불특정인	미정	입법예고	수렴중	이해관계자	물놀이 불특정인	미정	입법예고	수렴중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물놀이 불특정인	미정	입법예고	수렴중																			
이해관계자	물놀이 불특정인	미정	입법예고	수렴중																			
6. 규제존속기한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시																						
7. 신설규제의 내용	<p>1. 물놀이 위험구역 출입 금지 및 제한(조례 제정안 제7조제2항)</p> <p style="padding-left: 20px;">○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물놀이를 위한 출입과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p> <p>2.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25조제1항)</p> <p style="padding-left: 20px;">○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별표5의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징수</p>																						

공주시 공고 제2014 - 756호

「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체납자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체납자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체납액 최소화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교부신청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세무부서 경유하여 확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시 보조금 미 교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4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4)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우)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 기획담당관실

○ 전화: 041)840-2028, FAX: 041)840-2306

5)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기획담당관실 담당자 박우선(041-840-202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세무부서 경우)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신청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교부를 하지 않는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1. ~ 5. (생략)</p> <p><신설></p> <p>6. (생략)</p> <p>② (생략)</p>	<p>제5조(보조신청) ① ----- ----- ----- ----. <u>이 경우 제6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은 세무부서를 경유하여야 한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 ② (생략)</p> <p><신설></p>	<p>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신청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교부를 하지 않는다.</u></p>
<p>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사항은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생략)</p>	<p>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 ----- ----- ----- ----- ----- ----- ----- ----- <u>제외한다</u> ----- -----</p> <p>② (현행과 같음)</p>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사업 완료공고

금흥동 610-2번지 일원에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신축공사를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사업이 완료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6월 02일

공 주 시 장

1. 위 치 : 금흥동 61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사업
 - 명 칭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신축공사
3. 시행자 : 법무부장관
4. 사업내용

구 분	사업개요	비고
공공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신축공사- 부지면적 : 16,055.9㎡-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면적 : 2,001.38㎡(건폐율 12.47%)- 연 면 적 : 7,550.4㎡(용적률 41.49%)	
도로 (대로1-2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스콘포장 : 371.8㎡- 소형고압블럭포장 : 213.8㎡- 투수콘크리트포장 : 103.2㎡- 기타 부대공 1식	

5. 사업기간 : 2011. 06. 01.(인가일) ~ 2014. 12. 31.